

❸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 생산 ·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즉, 부수재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법 10[재화 공급의 특례] 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령 20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③ 부가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 적립 마일리지등으로만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③은 2017.4.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Note **자기생산 · 취득 재화**[부법 10[재화 공급의 특례] ①]

① 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타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법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의류와 함께 쇼핑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쇼핑백의 대가는 의류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을 판매업자가 자기의 개업식에 참석한 고객에게(불특정다수인이 아니므로 광고선전용이 아님) 무상으로 타을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Note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수재화 해당 [구입당시 기증품]

2. 견본품

3. 광고선전물

4.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것

-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② ①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 ③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
- ④ 면세사업관련
- 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 ⑥ 등록 전 매입세액
- ⑦ 접대비관련(생산 · 구입 당시 접대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 해당)

견본품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직매장 ·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4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직매장 ·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08.01 개정)

[1]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직매장 ·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4 [광고선전물의 배포]], 이는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증여하는 것은 곧 해당 사업자의 광고선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 광고선전용 재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투입요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예:의자카바 · 수건 · 성냥 · 식당차림표 · 재떨이 · 컵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②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특정장소에 간판을 제작 무상기증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됨 (부가 1265-455, 1982.2.22).
- ③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 상표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둥 간판을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부가 46015-2181, 1995.11.21, 국심 84서1443, 1984.11.7), 둥 자산을 광고선전장치로 계상한 경우 둥 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됨(재경부 법인 22631-129, 1992.7.24, 부가 46015-1393, 1998.6.25).
- ④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판매장려금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따라서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Note 법인세법상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즉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부대비용을 말함]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됨
[종전에는 사전약정 여부 등에 따라 손금산입, 절대비 처리로 달라졌음].

[3] 기증품(할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그러므로 판매장려금품의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4] 경품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 · 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6].

【 사업용 부동산 증여시 사업상증여에 따른 문제점 】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753, 2013.8.23.).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2238, 2007.8.9., 부가46013503, 2000.10.17. 사전법령부가-145, 2016.4.18].

필자 주)

임대용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 등 의제공급으로 과세하는 이유가 최종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는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킴으로써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하는 것으로 최종소비단계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거래의 다변화로 인해 사업자간에도 사업상증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과세사업용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증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전체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국고에 귀속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해석은 이러한 누적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기 위함이다. 이 경우 증여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다.

※ 수증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사업장증여에서 제외하고 직매장 반출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소득세집행기준 27-55-30 [광고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광고선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와 유사한 비용(접대비, 기부금, 판매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 분	광고선전비	유사비용	유사비용처리
지출대상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	—
지출목적	판매촉진, 구매의욕자극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지속	접대비
업무관련성	업무와 관련	사업목적과 무관	기부금
지급대상	사전약정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	매입처에게 판매수당·장려금 지급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판매장려금

▣ 법인세집행기준 19-19-21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11.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021.02.17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부칙 [대통령령령 제31443호]
제5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8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0,000원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5만원] 2021.2.17.개정 202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法호 19조 18.)

이에 따라 통상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개당 10,000원 [3만원] 이하의 물품은 특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개당 10,000원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특정인의 경우 연간 3만원 [5만원] 이내, 불특정다수인에게는 한도 없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가리지 않고 손금 용인한다는 의미이며,
이외에 현물로 제공되는 광고선전물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공물품에 최소한 법인의 상표나 상호 등이 명시되어 특정 법인의 광고선전물품임이 확인되고
둘째, 당해 물품의 가액이 통상의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특정인일 경우에는 연간 3만원 [5만원] 이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록개정]]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021.02.1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1442호]

제3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021.02.17 개정)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8.12.3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019.02.12 개정)
- ②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2021.02.17 개정)
- ③ 삭제(2010.12.30)
- ④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1.02.17 개정)
-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02.17 개정)